

기안용시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시45-113	(전화번호가-6593)	전결규정	조항 전결사항
처리기간	제2부시장		결재시 1974. 1. 25 제2부시장	감
시행일자	74.1.26			
보존년한				

보조 기관	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지역계획계장	권완 1974. 1. 12 감 의 진	협 조	영주방양관 (사물사사) 시민리장 중항계획계장 재개발계획계장 가로계획계장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	---

경유 수신 참조	각안감조	발신	통계	1974. 1. 29 검인
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	-------------------

제 목 도시계획 유수지 시안 결정

제 1 안

수신 내부결재

1. 잠실도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인 신동주상전동, 신전동 일부지역을 도시계획 유수지로 시안 결정로서 당시제9차 (73. 9. 14)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상의 한바 보충상의 안 및 회의록과 같이 의결되어 도시계획법 제9조에 의거 건설부에 도시45-1307호 (73. 9. 25) 로 제출 하였는바.

2. 본 시안은 도시계획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 제 6호 (74. 1. 5) 로 권한 위임된 사안이므로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안과 같이 ~~시안~~ ^{결정} ~~제출~~ 하외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도시계획 유수지 결정로서

시안명	위 치	면적 (M ²)	비고
상전 유수지	신동주상전동	33, 19.4	잠실도지구획 정리지구내

신천1유수지 성동구 신천동 34.493
 신천2유수지 " " 23.442
 ※: 병합하면 도시상고

제2안 고시안
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호

고시안심사	1974.1.19	제3	호
심사자	법제계장	법무	장관
 	 	 	

도시계획 (유수지) 시안 결정

1. ~~서울특별시~~ 도시계획 시안 (유수지) 결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령 제16호(74.1.5)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~~서울특별시~~ 시안 ~~부서~~에 비치하여 도시소유자 ~~및~~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기 한다.

1974. 1.

서울특별시

가. 도시계획 유수지 시안 결정도서

시안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삼전 유수지	성동구 삼전동	33.194	삼전도시계획 정리지구내
신천1유수지	" 신천동	34.493	"
신천2유수지	" "	23.442	"

※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~~서울특별시~~ 시안 ~~부서~~에 보관함.

제3안

수신 건설부장관 |발신| 시장
 제목 동 건

1. 도시계획 우수지 시인 결정이 별첨 도시문
시보 및 도면 표시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.

첨부 : 도시문 시보 및 관계도면 각 1부
제 4안

수신 : 수신처참조 | 도시시 시장

제목 : 동 건

1. 도시계획 우수지 시인 결정이 별첨 도시문 시보
및 도면 표시와 같이 결정되었기 홍보하니 관계도서를
제출(과)에 비치하여 동지도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기
하기 보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

첨부 : 도시문 시보 및 관계도면 각 1부

* 수신처 : 친호출장소장, 구호행정과리장, 하수리장
네임관리과장

제 5안

수신 : 호무처장관 (공보실장)

제목 : 관(시)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(시)보 게재를 의뢰하오니
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(시)보 게재 구분 : 과시

나. 관(시)보 게재 내용 : 도시계획 우수지 시인 결정

다. 배포장 수 : 도시계획담당 제 12층

지명: 2시문(12) 24(14)

